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3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동산) 9,339,920원, 지방교육세 673,360원, 농어촌특별세 448,910원, 취득세(부동산) 4,493,730원, 지방교육세 323,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21. 3. 29. B의 대표이사인 C과 사이에 B 소유의 ◯◯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C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4. 12.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2021. 4. 26. 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기재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당사자)** ① 다음 각호 기재의 사람 혹은 법인을 위탁자로 한다 1. 명칭 : B 주식회사 4. 대표자 : 대표이사 C ② 다음 각호 기재의 사람 혹은 법인을 수탁자로 한다. 1. 명칭 : C ③ 다음 각 호 기재의 사람 혹은 법인을 수익자로 한다. 1. 명칭 : B 주식회사 ④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 시 행위의 주체로 수익자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탁자가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 시 위탁자만 할 수 있는 행위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위탁자가 한 것으로 보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수익자만 행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위탁자는 행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해석을 한다.

제3조(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위탁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등기)

①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2조 기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제2조 기재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신탁의 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한다.

③ 본 조에 따라서 실행하는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①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물건과 권리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금융기관거래일 안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전을 해야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⑤ 수익자는 본조에 따른 수익과 비용에 대한 처분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⑥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⑤ 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수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나. B는 2021.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각 100,000원에 각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위 양도대금 합계 200,000원(= 100,000원 + 1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B는 2021. 4. 26. 위탁자 명의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당사자)

① 양도인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B

4. 대표자 : 대표이사 C

② 양수인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 원고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원상회복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12,00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0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15,279,89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 세 대 상	합계세액	세액 상세 현황				
			소계	본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제1부동산	10,462,190원	취득세	9,339,920	7,420,000	1,484,000	435,920
		농어촌 특별세	448,910	424,000	-	24,910
		지방교육세	673,360	636,000	-	37,360
제2부동산	4,817,700원	취득세	4,493,730	3,570,000	714,000	209,730
		농어촌 특별세	-	-	-	-
		지방교육세	323,970	306,000	-	17,97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취득세 납세의무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인 B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에 따른 원고로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위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자 지위이전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종전 위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최종 위탁자에게만 재산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종전 위탁자에게만 재산세 부과처분을 내리고, 최종 위탁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위와 같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단서에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명확성 원칙, 의회 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있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과세표준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종전 위탁자인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부동산 별로 각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사실이 객관적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이체확인증과 B의 출납전표를 통해 확인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 10만 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는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

설령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효력에 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상이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인 점,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의 취지 참조).

○ 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으나, 신탁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신탁법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2호),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3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후 신탁을 종료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등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본문에 규정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는 문언 그대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단서에 규정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신탁할 당시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마련된 창설적 규정에 해당함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가 단순히 확인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단서의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대통령령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위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를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④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신탁업자에게 재산을 신탁하고, 이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투자신탁의 형태로 설정·설립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등 집합투자재산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 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을 받으므로,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전받은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을 그 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의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 제2항은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 제3조 제2항은 '양도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겸 수익자인 B는 원고와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수탁자인 C의 동의를 얻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정하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에 해당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에 의하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하지 않아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4항은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5항은 '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 제2조 제3항 등에 따라 원고는 양도인인 종전 위탁자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이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위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다수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거나, 그러한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예시로 들고 있는 사례에서 다른 지방자체단체가 최종 위탁자에 대하여 재산세나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이유는 종전 위탁자 지위이전 자체가 무효 또는 가장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이 무효 또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참조).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아울러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바탕을 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35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고,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때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7헌가25 결정 참조).

나)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명확성의 원칙, 의회 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의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는 문언 그대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단서의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신탁할 당시 신탁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위 법률조항의 단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탁법 제2조는 '신탁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의 관리·처분·운용·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탁재산과 신탁의 유형이 다양하다. 따라서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구체적인 신탁계약의 내용, 신탁의 유형, 해당 신탁재산이 신탁 전에 신탁자 명의로 된 경위 등에 따라 판단될 필요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을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의회유보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위 법률조항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위 법률조항의 단서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할 수 있고, 위 법률조항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과세표준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는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지방세법 제7조 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의 양도대금 10만 원은 종전 위탁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과 비교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은 양도인인 종전 위탁자가 언제든지 서면 통보만으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에 연 12%의 이자만을 가산하여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의 양도대금 10만 원을 이 사건 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가치와는 무관하게 당사자 간에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인 10만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해석을 도출하기가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위탁자 지위이전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 또한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판사 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17

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끝.